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종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615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1. 3.

발 의 자 : 이종배 · 이인선 · 성일종
안철수 · 김성원 · 정운천
양향자 · 정우택 · 박대수
홍문표 · 송석준 의원
(11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에 따라 신용카드 등의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시 40%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. 또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여 매출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, 전통시장과 상점가 내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여 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음.

한편 '22년부터 신용카드와 연동된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이 발행되고 있으나,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어 상점가는 상대적 차별을 받고 있음.

이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에 상점가 사용분도 전통시장 사용분에 준하여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소상공인 매출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에 상점가를 추가하는 근거를 마련함(안 제126조의2제2항제1호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6조의2제2항제1호 중 “전통시장과”를 “전통시장 및 상점가와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) 제12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으로 정하는 전통시장 구역 안의 법인 또는 사업자(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제외한다)로부터 재 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 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제 1항제1호·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(이하 이 항에 서 “전통시장사용분”이라 한 다) × 100분의 40(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 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50)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2. ~ 7. (생략)	2. ~ 7. (현행과 같음)
③ ~ ⑩ (생략)	③ ~ ⑩ (현행과 같음)